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12호 2018. 7. 27.(금)

고 시

제2018 - 109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1
제2018 - 112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군청~서변마을회관)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4
제2018 - 113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8
제2018 - 114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1
제2018 - 119호	소하천등 정비 준공 고시	16
제2018 - 1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8

공 고

제2018 - 799호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공고	19
제2018 - 807호	남해군 방재성능목표 공표(정정)	20
제2018 - 824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제2018 - 827호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제2018 - 830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4
제2018 - 831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제2018 - 832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제2018 - 833호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공고	56
제2018 - 844호	남해군 우와광고물 등의 관리와 우와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7
제2018 - 845호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2
제2018 - 860호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7
제2018 - 862호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제2018 - 86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제2018 - 86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0
제2018 - 86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3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109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2018. 7. 5.)로 결정(변경)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12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88,905.7	-	579,488,90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7,341.7	-	357,677,341.7	61.72		
도 시 지 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 거 지 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 업 지 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 리 지 역	소계	136,536,274.7	증)33,604.0	136,569,878.7	23.56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59,425.0	감)34,185.0	53,325,240	9.20		
	계획관리지역	35,940,797.6	증)67,789.0	36,008,586.6	6.21		
농림지역	154,011,126.0	감)33,604.0	153,977,522.0	26.57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주) 기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21호(2017.7.3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3,6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복합형(주거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4,185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40,585	-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창선 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구 신설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면적 : 140,5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18 - 112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군청~서변마을회관)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 칭 :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폭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37호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71m	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남 해 군 공 보

(6) 제 612 호

2018년 7월 27일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419-7	대	18	18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19-6	대	202	4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	
3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98		국(국토교통부)	-	
4	남해읍 서변리	323-1	전	86	79		남해군	-	
5	남해읍 아산리	406-4	전	81	60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06-2	도	33	30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05-1	대	13	7		남해군	-	
8	남해읍 서변리	311-1	전	3	3		남해군	-	
9	남해읍 서변리	311-2	도	43	42		남해군	-	
10	남해읍 서변리	311-10	대	8	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1 관산하이츠빌라 나-301	조*형	-	
11	남해읍 서변리	324-1	전	7	7	남해읍 아산리 338	김*금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28	남해읍 아산리 338	김*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3-2	도	69	44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11-6	대	194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1 관산하이츠빌라 나-301	조*형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6	담장	블록	m ²	24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동백나무	30년생	주	4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목련나무	20년생	주	2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2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11-6	주택	블록합석	m ²	9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1 관산하이츠빌라 나-301	조*형	
		철재대문	철재	식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1 관산하이츠빌라 나-301	조*형	
3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11-3	주택	블록합석	m ²	1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56길 43, 101동 1015호	이*봉	
		물탱크	FRP	EA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56길 43, 101동 1015호	이*봉	
		철재대문	철재	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56길 43, 101동 1015호	이*봉	

남해군 고시 제2018 - 113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중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 칭 :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폭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9호, 한빛그린~여중) 개설공사	소로 2-39호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104m	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남 해 군 공 보

(10) 제 612 호

2018년 7월 27일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서변리	329-8	전	292	9		남해군	-	
2	남해읍 서변리	329-5	대	59	22		남해군	-	
3	남해읍 서변리	330-1	전	283	232		남해군	-	
4	남해읍 서변리	331-1	전	200	200		남해군	-	
5	남해읍 서변리	320-3	전	157	157		남해군	-	
6	남해읍 서변리	319-10	전	1	1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84-2	입*숙 외 1인	-	
7	남해읍 서변리	319-8	전	202	202	남해읍 서변리 65-2	정*순	-	
8	남해읍 서변리	317-6	도	833	22		남해군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9-5	담장	블록	㎡	20		남해군	-
		창고	조립식	㎡	6		남해군	-
	서변리 330-1	유자나무	15년생	주	12		남해군	-
	서변리 331-1	유자나무	15년생	주	12		남해군	-
	서변리 319-8	유자나무	15년생	주	12	남해읍 서변리 65-2	정*순	-

남해군 고시 제2018 - 114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 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폭	비고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중로3-1호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일원	194m	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355-2	도	5,248	117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09-7	답	379	379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414-12	답	40	40		남해군	-	
4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63		국(국토교통부)	-	
5	남해읍 아산리	419-8	답	27	27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19-11	대	92	92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7	남해읍 아산리	419-9	대	11	11		남해군	-	
8	남해읍 아산리	419-13	대	167	167		남해군	-	
9	남해읍 아산리	419-12	대	20	20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	
10	남해읍 아산리	419-10	대	129	129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11	남해읍 아산리	419-3	도	10	4		남해군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35	남해읍 아산리 338	김*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4-6	대	227	227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22-14	전	209	209		남해군	-	
15	남해읍 서변리	326-1	전	269	269		남해군	-	
16	남해읍 서변리	327-2	전	243	243		남해군	-	
17	남해읍 서변리	329-6	대	2	2		남해군	-	
18	남해읍 서변리	329-7	대	10	10		남해군	-	
19	남해읍 서변리	329-8	전	292	283		남해군	-	
20	남해읍 서변리	329-3	전	41	10		남해군	-	
21	남해읍 서변리	329-5	대	59	37		남해군	-	
22	남해읍 서변리	328	전	109	25	남해읍 서변리 65-7	이*진	-	
23	남해읍 서변리	328-2	전	174	165	남해읍 서변리 65-7	이*진	-	
24	남해읍 서변리	330-1	전	283	51		남해군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09-7	대문	블록슬라브	m ²	6		남해군	-
		담장	블록	m ²	84		남해군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군	-
		비닐하우스		식	1		남해군	-
		동백나무	30년생	주	4		남해군	-
		목련나무	20년생	주	2		남해군	-
		사철나무	20년생	주	4		남해군	-
2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5, 419-11	주택1	블록슬라브	m ²	105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주택2	블록슬라브	m ²	8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창고	블록슬라브	m ²	7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담장	블록	m ²	48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물탱크	FRP	EA	1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마당콘크리트		m ²	22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사철나무	30년생	주	3	남해읍 서변리 323-3	이*아	-
3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6, 419-12	담장	블록	m ²	30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
		비닐하우스		식	1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
		동백나무	30년생	주	4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
		목련나무	20년생	주	1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
		사철나무	20년생	주	4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
		감나무	20년생	주	2	남해읍 아산리 311-6	안*기	-
4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10, 419-4	주택	블록슬라브	m ²	108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대문	블록슬라브	m ²	6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창고	블록스레트	m ²	7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창고	블록스레트	m ²	1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물탱크	FRP	EA	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철재대문	철재	식	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담장	블록	m ²	6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사철나무	20년생	주	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감나무	20년생	주	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67	강*희	-
5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4-6	담장	블록	m ²	24		남해군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군	-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6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2-13, 322-14	주택	블록슬라브	m ²	160		남해군	-
		물탱크	FRP	EA	2		남해군	-
		창고	조립식	m ²	11		남해군	-
		마당콘크리트		m ²	17		남해군	-
		마당보도블럭		m ²	10		남해군	-
		담장	블록	m ²	10		남해군	-
7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9-2, 329-7, 329-8	주택	블록슬라브	m ²	100		남해군	-
		담장	블록	m ²	36		남해군	-
		물탱크	FRP	EA	2		남해군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군	-
		마당콘크리트		m ²	17		남해군	-
8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9-5	담장	블록	m ²	40		남해군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군	-
		창고	조립식	m ²	10		남해군	-
		사철나무	20년생	주	5		남해군	-
		등근소나무	30년생	주	2		남해군	-

남해군 고시 제2018 - 119호

소하천등 정비 준공 고시

「소하천 정비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남 해 군 수

- 1. 다음 가가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하천등 정비의 개요
 - 가.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 향도천
 - 나. 시행위치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34(297번지 인근)
 -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2016. 9. 9. ~ 2018.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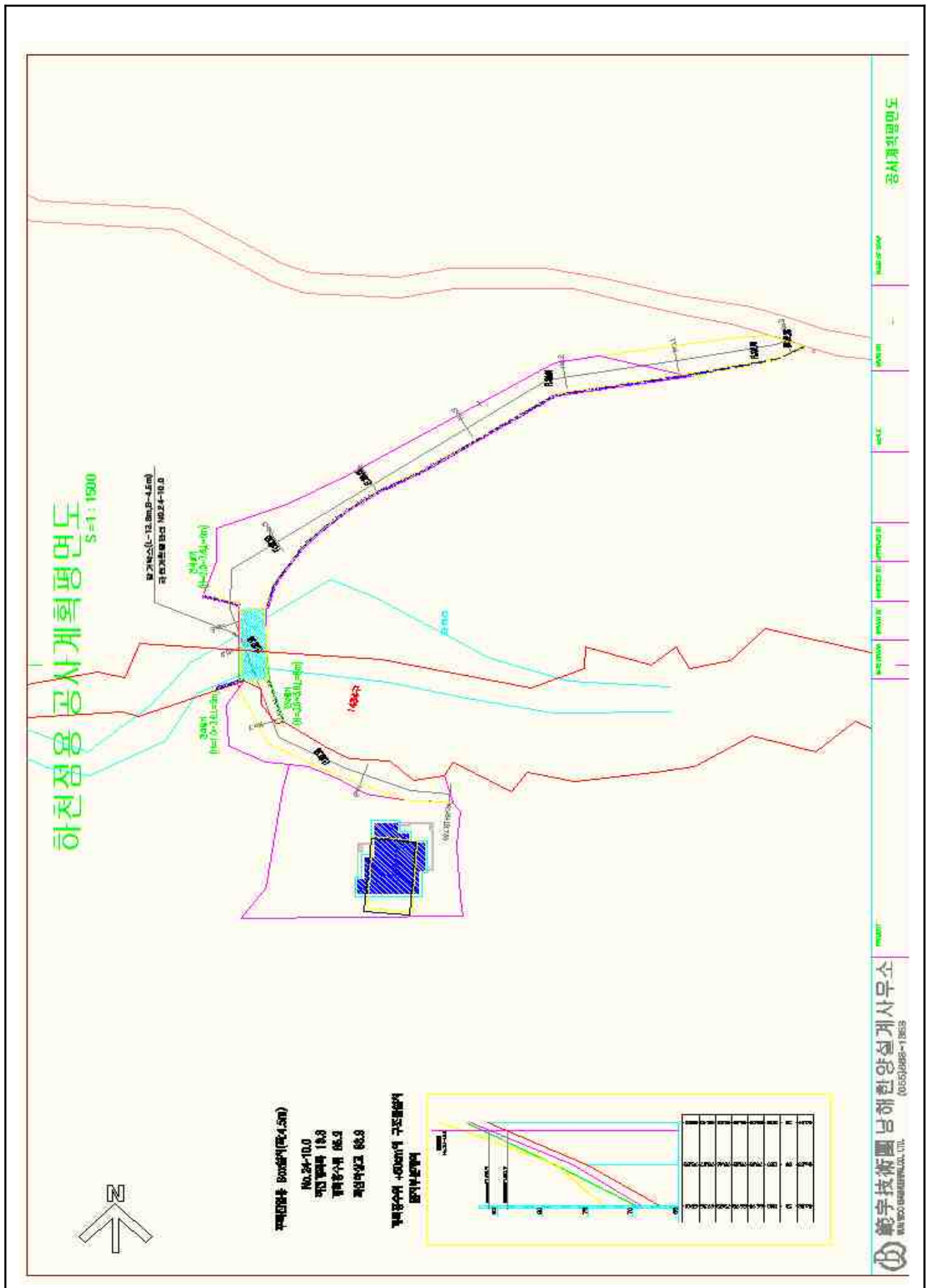
2.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 : 이 일 우

3.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면적 (㎡)	소유자 (관리자)	비고
군	읍면	리						
남해	미조	미조	1434	구	16052	51	농림축산식품부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 붙임참조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소유자가 유지관리 함.



남해군 고시 제2018 - 1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금양천)
2. 성 명 : 송한0
3.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소정관길 194(대저2동)
4. 점용목적 : 배수관로 배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번지(801-2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2㎡
7. 점용기간 : 2018. 8. 1. ~ 2023. 7. 30.(5년)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799호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 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주소	성명	
남해 정치망어업 제131호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멸치류, 기타어류	상주면 양아리	126,750	2018.7.13 ~ 2028.7.12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길 25	김춘태 외1명 (심민수)	2018.7.13

○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 정치망어업 제96호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멸치류, 갈치류, 삼치류	상주면 양아리	126,750	2011.7.30 ~ 2021.7.29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길 25	김춘태 외1명 (심민수)	대체 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8 - 807호

남해군 방재성능목표 공표(정정)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남해군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3. 방재성능목표

자치단체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남해군	95mm	140mm	175mm

4. 방재성능목표 적용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 3)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 5)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5. 방재성능목표 적용 등

- 도시지역*내에 기 설치된 방재시설**에 대해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처리 능력 등 방재성능을 평가
 - 평가결과 기존 방재시설의 성능 부족으로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에 대한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 시 방재성능목표 적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하수관로, 배수(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류시설, 저류지, 우수지, 소하천 등
 - *** 기존 방재시설 정비(신설·증설·확장 등) 또는 배수구역 내 홍수량 분담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설치 등) 등의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대책
-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 평가 결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부족할 경우 배수체계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 시 적용
 - * 하수관로 등 방재시설의 계획(규격·규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른 관련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재현기간(설계빈도)을 적용하여야 함
 - ** 홍수량 분담을 위한 우수지,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설치 등의 개선대책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델, ILLUDAS 모델, SWMM 모델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부터

남해군 공고 제2018 - 824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대불금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 수정(안 제6조제1항) : 대불금→대지급금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817,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전화 055-860-3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불금” 을 각각 “대지급금”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공무원은 수급권자에 게 의료급여를 행할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 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u>대불금</u>을 구분 결정 한 후 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 위를 하고 <u>대불금</u>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다.</p> <p>② (생 략)</p>	<p>제6조(지출) ① ----- ----- ----- -----<u>대지급금</u>----- ----- -----<u>대지급금</u>----- ----- --.</p> <p>②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18 - 827호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상위 법령 위배 및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름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6,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희망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u>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u>」에 따라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은 <u>3년 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④ ~ ⑥ (생 략)</p>	<p>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u>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관련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830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 등 :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등
나. 신분보장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1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4,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해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3.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4.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831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예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족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신설 지급 : 월5만원
 - 나. 무공수훈자 유족 수당 지급 : 5만원(2만원 인상)
 - 다.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구비서류 조정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1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7,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희망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와” 를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과” 로 하고, “드높이고” 를 “드높이고” 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참전유공자 미망인” 이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중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를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

-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 2.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
- 3.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 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30일 이내” 를 “15일 이내”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	-------------

참 전 유공 자	성 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주 소					
	사망 일자					
신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확인원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u>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을</u>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u>드높이고</u>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u>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과 전몰군경 유족을</u>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u>드높이고</u>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본문생략> 1. ~ 3. <생략> <신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참전유공자 미망인</u>”이란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서</u>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u>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p>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u>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에게</u>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단서 신설></p> <p>1. <생략> 2. <u>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월 3만원 지급</u> 3. <u>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u></p> <p>4. <u>그 밖에 그 밖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의 -----.</u></p>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u>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u> -----.</p> <p><u>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u></p> <p>1. <현행과 같음> 2. <u>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u> 3. <u>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u> 4. <u>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u> 5. <u>그 밖에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u> -----.</p>

<p>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 ② <생략></p> <p>③ <신설></p>	<p>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 “30일 이내” 에 신청자에 대해서-----</p>	<p>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15일 이내” 에 신청자에 대해서-----</p>

남해군 공고 제2018 - 832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신설 : 월 5만원 지급

나. 지급대상자

합계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230명	2명	135명	15명	4명	4명	48명	22명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1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7,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희망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하며, 보훈명예수당은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

제10조(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등)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13조(보훈명예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조 관련)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상구분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성별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지급기관 (예금계좌)		예금주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하며, 보훈명예수당은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p>
<p><신설></p>	<p>제10조(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p><신설></p>	<p>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u>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p>
<p><신설></p>	<p>제12조(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등) <u>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u></p>
<p><신설></p>	<p>제13조(보훈명예수당 지급중단)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u></p> <p><u>1.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u></p> <p><u>2.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u></p>
<p>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u>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u></p>	<p>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u>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u></p>

<p>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10조</u>(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u>제15조</u>(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u>제11조</u>(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6조</u>(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남해군 공고 제2018 - 833호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10호	어류등양식 (축제식)	새우	고현 갈화	70,000	2018.07.20 2028.07.19 (10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갈화어촌계	재개발
남해양식 제511호	어류등양식 (축제식)	새우	고현 갈화	143,600	2018.07.20 2028.07.19 (10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갈화어촌계	재개발
남해양식 제512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입현	40,000	2018.07.24 2028.07.23 (10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47	박도순 외 1명	재개발

○ 양식어업권 포기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03호	어류등양식 (축제식)	새우	고현 갈화	70,000	2008.07.20 2018.07.19 (10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갈화어촌계	재개발
남해양식 제104호	어류등양식 (축제식)	새우	고현 갈화	143,600	2008.07.20 2018.07.19 (10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갈화어촌계	재개발
남해양식 제105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입현	40,000	2008.07.24 2018.07.23 (10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47	박도순 외 1명	재개발

※ '18/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8 - 844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5일 이내로 개정하여 주민의 옥외광고물 이용권한을 보장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5일 이내로 개정(안 제22조제1항)
 - 현 행 : 현수막의 표시기간 10일이내
 - 개 정 : 현수막의 표시기간 15일이내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1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74,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전화 055-860-3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찬성	반대
의 건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10일” 을 “15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현수막 표시기간 및 철거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u>10</u>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22조(현수막 표시기간 및 철거 등)_ ① --- -----<u>1</u> <u>5</u>일-----, ----- ----- -----.</p> <p>②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18 - 845호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남해군 거북선의 관람료 면제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람료 면제조항의 정비(안 제7조) : 행정자치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고, 면제 조항을 현행화 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1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632,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전화 055-86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5.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이상 노인
6.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8.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u> 2.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u> 3. <u>6세 이하인 자와 노인</u> 4. <u>국가유공자증 소지자</u> 5. <u>「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수첩 소지자</u> 	<p><u>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u> 2. <u>「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u> 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u> 4. <u>「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u> 5. <u>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u> 6. <u>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u> 7. <u>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u> 8. <u>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u> 9.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남해군 공고 제2018 - 860호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한 군 소속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장례비용 지원 등 군청장 집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 남해군장, 남해군민장, 남해군청장, 가족장(안 제2조)
 - 나. 군청장 대상자에 현직 군 소속 공무원 외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 추가(안 제7조)
 - 다. 위원회 심의사항에 사망자의 군장 등 대상 여부 심의·결정사항 추가(안 제9조제6항)
 - 라. 군청장 및 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가족장으로 집행하는 경우 장례비 기준에 따라 2천만 원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23,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후생복지단체팀(전화 055-860-3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직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장”, “남해군민장”, “남해군청장”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족장”이란 남해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모든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남해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남해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남해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4조(군장 등의 범위) 군장·군민장 및 군청장(이하 “군장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군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장으로 할 수 있다.

1. 현직 군수
2. 현직 군의회 의장

제6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 군수(단 재직 중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자는 제외한다)
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7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현직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대상자 결정) ① 군장·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장례위원회 설치) 군장 등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장·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남해군의회의장
2. 남해경찰서장
3.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4. 남해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장·군민장은 연장자 순의 위원이, 군청장은 「남해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의 군장 등 대상 여부 심의·결정(군청장의 경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⑧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고문) ① 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장례 공고) 군장 등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장례비용) ① 군장 및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군청장 및 가족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 중 2천만 원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군청장 대상이 일반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추진사항) 군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862호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상위법령 위배 및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름
 - 나. 위원임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안 제4조)
 - 임기 연장으로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아동장애인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3,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아동장애인팀(전화 055-860-38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를 “위원회의 위원은” 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하되,” 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해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제1항 중 “2년” 를 “3년” 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p> <p>①·② (생 략)</p> <p>③ <u>당연직</u>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군수가 위촉하되</u>,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u>남해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p> <p>2. <u>장애인관련 단체장</u></p> <p>3. <u>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3조(구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u>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u></u>, 위촉 위원 중----- ----- -----.</p> <p>1. <u>장애인관련 단체장</u></p> <p>2. <u>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3. <u>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u>3년</u>으로 하되, ----- ----- -----.</p>

남해군 공고 제2018 - 86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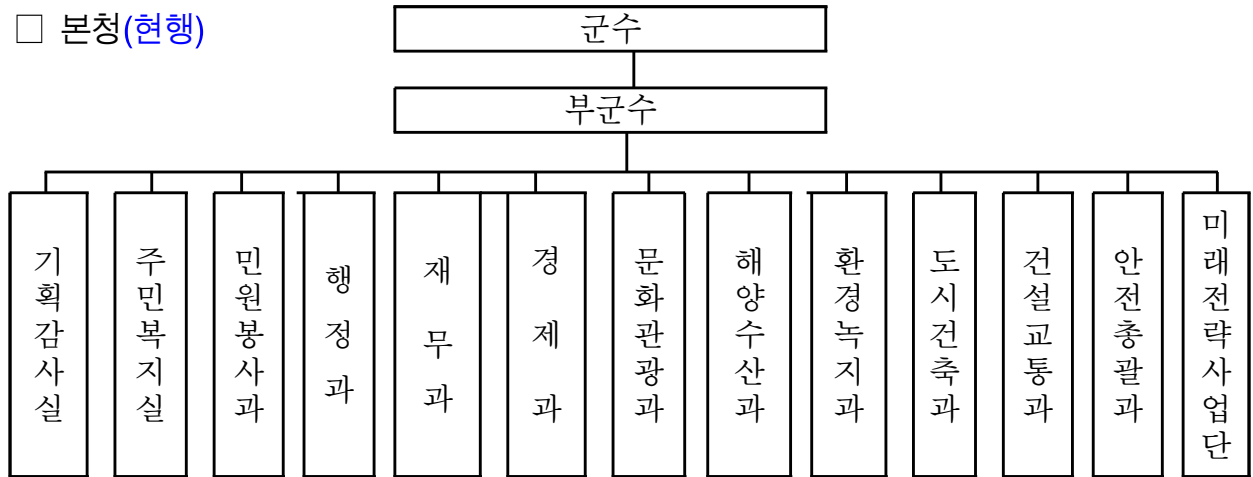
2. 개정이유

- 가. 2개국 설치를 통한 직무의 관장 범위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
- 나. 관광정책담당관 신설로 관광분야 행정역량 강화
- 다. 환경 변화 및 지역 현안수요의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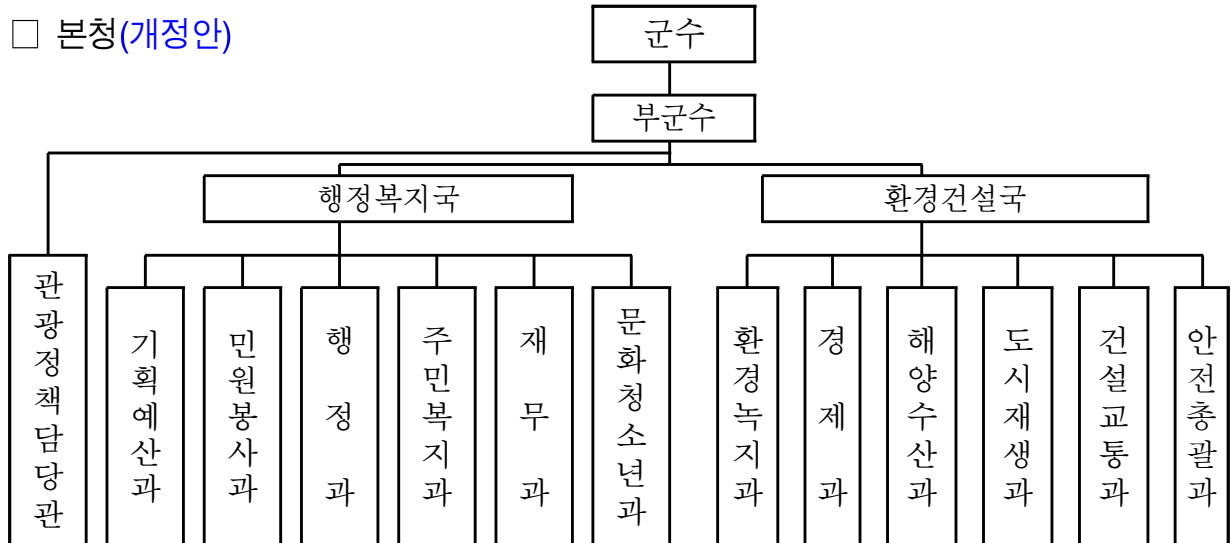
3. 주요내용

- 가. 국 설치기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 분장하기 위해 2국을 설치함 (안 제5조)
 - 행정복지국 :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청소년과
 - 환경건설국 : 환경녹지과, 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 나. 관광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관을 신설함(안 제6조, 제7조)
 - 관광정책담당관
- 다. 조직개편 전후 비교
 - 당초 : 2실 10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읍9면(122팀)
 - 변경 : 2국 1관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읍9면(133팀)

□ 본청(현행)



□ 본청(개정안)



□ 직속기관 : 농촌지원과 ⇒ 농촌활력과 (명칭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부군수 밑에 관광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관광정책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관광기획 및 축제, 관광마케팅 및 홍보, 관광개발, 관광시설 및 운영으로 한다.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환경건설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청소년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책개발과 군정기획·조정, 홍보 등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 지적민원, 도로명주소 등 종합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3. 조직·인사운영, 직원복지,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4. 희망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군민복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국·공유재산관리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문화재 보존·관리, 아동·보육·청소년 등 군민의 문화와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환경건설국) ① 환경건설국에 환경녹지과, 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환경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환경정책 및 기후변화, 폐기물처리, 환경시설, 산림보전등 환경과 산림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정책, 일자리창출, 민간자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산행정기획 조정과 해양보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도시재생, 경관디자인, 복합민원,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리와 농촌개발, 농업기반 조성, 도로, 교통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재난대응 총괄, 재해복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1. 보건행정의 기획조정과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 3. 방문건강서비스에 관한 사항
- 4. 감염병 관리 및 의료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 5.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 6. 치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농업·농촌 발전방안 기획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 2.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 4. 축산정책 및 축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5.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6. 농촌진흥시책, 농업기술 홍보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 7. 체험마을 및 관광농업에 관한 사항
- 8.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의·식·주 등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 9. 농업기계화 촉진 및 임대 농업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10.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11. 식량작물 생산 안정을 위한 새기술 보급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12. 원예작물 및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 13.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생산 및 산업화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사업소

- 가. 체육행정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체육진흥 및 잔디산업에 관한 사항
- 다. 레포츠와 시설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소

- 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및 상하수도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 나.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하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남해군 보건소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 일원
남해군 이동면 보건지소	이동면 무림로 64-5	이동면 일원
남해군 상주면 보건지소	상주면 남해대로 716	상주면 일원
남해군 삼동면 보건지소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가길 11-9	삼동면 일원
남해군 미조면 보건지소	미조면 미조로236번길 41	미조면 일원
남해군 남면 보건지소	남면 남서대로 778-11	남면 일원
남해군 서면 보건지소	서면 남서대로1687번길 28-4	서면 일원
남해군 고현면 보건지소	고현면 탐동로 43	고현면 일원
남해군 설천면 보건지소	설천면 설천로 654	설천면 일원
남해군 창선면 보건지소	창선면 창선로 60-9	창선면 일원
시문보건진료소	삼동면 난음로 338	시문, 영지, 수곡, 고암, 갈현
동천 보건진료소	삼동면 동부대로 1287	동천, 금천, 양화금, 내동천, 물건, 은접, 둔촌, 삼화, 봉화, 화암, 내산, 화천, 대지포
가인포보건진료소	미조면 동부대로 461	노구, 가인포, 향도, 초전
홍현보건진료소	남면 남면로 355-5	홍현1·2, 숙호, 가천
선구보건진료소	남면 남면로 1163	선구, 향촌, 사촌, 운암, 임포
덕월보건진료소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18	구민, 덕월, 남구, 북구
남상보건진료소	서면 남서대로2197번길 6	중리, 상남, 작장, 남상, 염해
중현보건진료소	서면 남서대로2618번길 6	중현, 회룡, 정포, 노구, 도산, 현촌, 우물, 유포
노량보건진료소	설천면 노량로 198	노량, 덕신, 감암, 월곡, 왕지
대벽보건진료소	창선면 서부로1244번길 16	대벽, 냉천, 단항, 소벽
율도보건진료소	창선면 율도로 199	율도, 고순, 서대, 당항
광천보건진료소	창선면 서부로 432-1	광천, 사포, 신흥, 보천
연곡보건진료소	창선면 연곡로 25	부운1·2, 연곡, 오용
고두보건진료소	창선면 흥선로 633번길 4	식포, 언포, 고두, 가인
적량보건진료소	창선면 흥선로1198번길 10	적량, 대곡, 장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제10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체육시설사업소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상하수도사업소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 공고 제2018 - 86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2개국 설치를 통한 직무의 관장 범위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
 - 나. 관광정책담당관 신설로 관광분야 행정역량 강화
 - 다. 환경 변화 및 지역 현안수요의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 설계
3. 주요내용
 - 가. 국 설치기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 분장하기 위해 2국을 설치함 (안 제5조)
 - 행정복지국 :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청소년과
 - 환경건설국 : 환경녹지과, 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 나. 관광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관을 신설함(안 제6조, 제7조)
 - 관광정책담당관
 - 다. 과 및 팀 신설(안 제5조, 제6조, 제13조)
 - 신설과 : 문화청소년과
 - 신설팀 : 관광마케팅, 정보전산, 군민소통, 문화교육청소년, 아동보육, 환경시설, 친환경에너지, 수산자원, 도시재생, 건축지도 하천관리, 치매예방,

귀농귀촌, 농기계관리

- 통합팀 : 법무통계+규제개혁 ⇒ 법무개혁
- 폐지팀 : 미래전략, 특화사업(미래전략사업단)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실·국장·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 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관광정책담당관 : 관광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보한다.
2.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환경건설국 : 환경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소장 등) ① 남해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소장의 직급)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남해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및 농업기술과를 둔다.

1.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4장 사업소

제10조(소장 등) 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1.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5장 읍·면

제12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이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상주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삼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으로 보한다.
5. 미조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으로 보한다.
6. 남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7. 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8. 고현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9. 설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창선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부읍·면장) 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하며, 직급 및 직렬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읍부읍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2. 이동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주사로 보한다.

3. 상주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4. 삼동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5. 미조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6. 남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7. 서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8. 고현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9. 설천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10. 창선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제13조(분장사무) 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관광정책담당관>

담 당 사 무	비고
① 관광기획 및 축제에 관한 사항 1. 관광진흥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남해관광개발공사 설립 3. 지역축제 발굴 육성 및 지원 4. 사계절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5. 보물섬 미조항 멸치&바다축제 총괄·기획 6.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 지원 7. 섬머 페스티벌 총괄·기획 8. 독일마을 맥주축제 총괄·기획 9. 이순신 호국제전 총괄·기획 10. 그 밖의 관광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② 관광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홍보물 발간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 3.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4. 관광 통계 및 자료 수집 분석 5.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6. 관광사업 신고·허가·등록 및 지도·감독 7.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8.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9.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 10.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협력 및 지원 11. 유람선 관광객 유치 및 요트, 크루저 관광 활성화 12. 그 밖의 관광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업무	
③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 2.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3.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4. 독일문화 체험공원 조성 5.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6. 관음포관광공원 조성 7. 송정관광지 관리(송정, 설리) 8. 신규 관광개발사업 발굴 9.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 10. 보물섬 800리길 간이역 조성사업 11. 보물섬레일바이크 조성(기차미니어처가든) 12.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13.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 14. 향노화산업 추진 15. 그 밖의 관광개발에 관한 업무	
④ 관광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순신 순국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2. 이순신 영상관 운영 관리 3. 이순신 순국공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이순신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독일마을 및 원예예술촌 관리 6. 파독전시관 관리운영 7. 보물섬 캠핑장 및 약초테마 홍보관 관리 운영 8. 단항 공중화장실 관리 9. 신전지구 정비 및 관리 10. 노량 생태주택단지 관리 11. 동대만 간이역 운영 12. 서상 게스트하우스 관리 13.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14. 힐링 국민어가캠핑장 조성사업 15. 관광개발 준공 사업장 시설물 유지관리	

[별표1]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기획예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정책개발과 군정 종합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1. 실 소관업무 종합기획·조정	
2.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관리	
3. 주요업무계획 수립	
4. 종합대책 수립	
5. 주요업무 종합평가	
6. 군수·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7. 목표관리제 및 성과관리제 운영	
8. 대형프로젝트 사업 발굴	
9.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총괄	
10. 군수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11.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12. 의회 관련 업무	
13. 군정 평가와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14. 정부 및 경남도 주요업무 합동평가	
15.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16.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장 정책 수립 보좌	
18. 남해안시대 추진업무 총괄 기획·조정	
19.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사업 총괄관리	
20.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21. 국제교류기반 확대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22. 국제자매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활동	
23.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4.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25.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	
26. 보물섬남해포럼 지원	
27. 국내·외 시책쇼핑(시책발굴)	
28.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2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0. 지역균형발전사업	
31.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기획예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②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1. 공보 및 홍보계획 수립 시행	
2.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한 군정 홍보	
3. 각종 홍보물 기획 발간	
4. 남해군정 소식지 및 공보지 발간 배포	
5. 신문 공고 및 고시	
6. 군정 사진, 영상 촬영 및 기록 관리	
7. 인터뷰, 인사문 작성 및 관리	
8. 신문 스크랩 및 뉴스 모니터링	
9. 기자 브리핑 및 언론 취재 지원	
10. 군정 홍보 광고	
11.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신고	
12. 전시 홍보 계획 수립	
13. 경상남도 종합정보지 경남공감 배부 관리	
14. CIP활용 총괄관리	
15. 남해 군조, 군화, 군목의 관리	
16. 행정방송실 운영 및 청내방송	
17. 홍보매개체 보급 육성	
18. 난시청지역 해소대책 추진	
19. 언론중재 업무	
20. 홈페이지 뉴스/미디어, 열린군수실 관리	
21. 홍보실적 평가관리	
22. 그 밖의 지역홍보 업무	
③ 정책·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정 감사계획 수립 시행	
2. 주요 정책 감사 평가	
3.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	
4. 공무원 비리에방 및 부정비리 감사	
5. 무사안일 및 행정편의주의 척결	
6. 상급기관 감사와 수감 요구사항 처리	
7.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감사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사	
9. 주민명예감독관제, 공사현장 사전설명회 운영 지도	
10. 일상감사 및 기술부분에 대한 일상감사로 신기술 도입 확대	

<기획예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11. 상부기관 이첩민원 종합관리 12. 다수인 민원관리(민원처리 확인) 13.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14. 공직자 재산등록 15. 공직자윤리위원회 16. 청렴도 측정 및 군민 설문(군민불편, 비위사항)조사 17. 진정민원사항 조사 18. 계약심사제 운영 19. 그 밖의 감사에 관한 업무	
④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1. 지방재정운용 및 종합계획 수립 2.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도비 확보 총괄 및 대책 추진 4. 균특회계 편성·확보·총괄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세 산정 및 특별교부세 확보·집행 관리 6.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괄 7.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9. 투자심사 총괄 10. 지방 보조금 편성·감독 총괄 11. 보조금 성과 평가 관리 12. 주요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 재정공시(예산, 결산, 공공시설)총괄 14. 지방 재정분석 및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5.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6.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17. 지방채 발행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18. 예산 이체·전용·변경 19. 예산 배정·이월 관리 20. 성립전 예산 편성 21. 예비비 편성 및 지출 관리 22.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23. 전시예산 작성 총괄 24. 예산효율화 및 절감 관리(예산낭비센터 운영)	
<기획예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25.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공사, 공단 총괄 관리 26. 재정전산관리(e-호조시스템, e-나라도움) 27. 지역 통합 배정 통계 작성 28. 기타 지방재정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법무, 소송 및 통계,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질의 및 해석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법령상당 및 안내 5. 자치법규(조례·규칙) 업무에 관한 사항 6. 행정규칙(훈령·예규) 업무에 관한 사항 7.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8. 통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9. 통계연보 발간 10. 행정지도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관한 사항 12.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 업무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정보공통이용시스템 관리 및 외국인주민과 외국국적동포 현황 관리 14. 행정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자체 규제의 개혁 및 관리 총괄 16.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17.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18.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19.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20.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21.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22.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23.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조례' 제정 운영 24. 민간 규제개혁자문단 운영 25.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운영 26. 지방규제 지수 운영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민원봉사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종합민원대책 수립 및 창구민원과 민원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업무 기획·조정 2. 민원행정 개선대책 추진 및 각종민원의 종합관리 3. 창구민원 즉결처리 4. 여권업무 5. 민원조정 관련 업무 6.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종합 운영 7. 배달민원처리제, 민원인후견인제 운영 8. 민원공개법정 운영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0.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11. 고객만족 및 친절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13. G4C 민원처리 및 수수료 정산 업무 14.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업무 15.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16. 그 밖의 민원에 관한 사항	
②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사무 정리상황 보고 2. 지적통계 관리 3. 지적공부 관리 4.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조사·정비 5.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조사 정리 6. 지적서고 및 종이도면·대장, 지적전산 관리 7. 지적공부 등의 등록사항 점검 8. 지적공부 복구 업무 9. 토지 이동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조사관리 10. 지적측량장비 유지관리 11. 지적측량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조사·관리 1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3.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 14.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민원봉사과>

담 당 사 무	비고
1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16. 미등록 토지조사 및 등록 17. 토지이동 등록사항 오기정정 18.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및 수치지형도 관리 19. 공간정보 운영 및 보안관리(공간정보 중복투자 사후관리, 유통 등) 20.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관리 운영 21.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2.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23. 지형·지물 변동 자료 신고 24. 폐쇄 지적(임야)도 및 세부 측량결과도 도면 전산화 추 25. 지적정보(조상땅 찾아주기)에 관한 사항 26.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 사업 추진 27. 부동산종합공부 권한관리 28.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29. 그 밖의 지적민원 업무	
③ 지적 재조사 및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2.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 추진 동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사전조사표 작성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지구 경계점 설치 및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0. 사업지구 성과열람,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사업지구 조정금 산출, 정산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4.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5. 경계설정, 조정, 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	

<민원봉사과>

답 답 사 무	비고
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운영 20.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입체지적(지상·지하) 등록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23. 지적불부합지 대상지 조사, 정리에 관한사항 24.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 25. 공적장부 주소전환 및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26.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운영 27. 도로명주소 홍보 및 조례 제·개정 28.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관리 29. 도로명주소 위원회 설치·운영 30.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 31. 국가지정번호 관리 32.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폐지 및 고시 33. 도로명 주소 대장열람 및 발급 34. 도로명 주소 정비 및 DB검수, 관리, 제공 35. 도로명 주소 시설물사용 광고 협의 36.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련 민원처리 37. 국가기초구역 관리 38. 지명위원회 관리 39. 그 밖의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④ 부동산등록 및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발부담금 사업 판정 및 산정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3. 개발부담금 통계 및 자료 관리 4. 부동산 중개업 등록 관리 5. 부동산 중개업 지도 감독 6.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및 관리 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 편집지적도 관리 및 자료제공 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 편집지적도 등록 수정 9. 토지거래허가 지역 지정요구 및 관리 10.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11. 부동산실명제위반 관리	

<민원봉사과>

답 답 사 무	비고
12.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13. 지적제증명 발급 14. 법인 아난 사단·재단, 기타 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15. 부동산등기변동자료에 의한 소유권 정리 16.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조사·정비 17. 토지소유권 오기정정 업무 18.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1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21.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 및 처리 22.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23. 부동산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 및 보류처리 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관리 25.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운영 및 관리 2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관리 27.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28. 개별공시지가 검증필지 선정 및 검증 2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조정, 공시 30.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31.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에 따른 지가자료 정리 및 통계관리 32. 개별공시지가 청정 3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34.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35. 그 밖의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주민의견 수렴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A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행정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1. 선거사무 2. 국민, 주민투표 3. 행정구역 4. 조직관리 5. 인사운영 6. 공무원 상시학습제 운영 및 교육훈련 7. 포상 8. 정원 외 상근인력,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자 관리 9.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0. 인사기록카드 관리 11. 퇴직, 전출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12. 군수 읍·면 방문 및 군민과의 대화 13. 공무원 관련 각종 시책 14. 여론 및 동향 1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16. 행정서비스현장 17. 재외향우회 지원 18.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련 사무 19. 행정과 소관 사무의 기획, 조정 20. 읍·면 소관 사무의 지도, 감독 21. 군청직장민방위대 22. 적십자회비 23. 공무원증 24. 자치경찰제 25. 남해군 기관장 협의회 운영 26.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운영 27.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28.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2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② 일반서무, 문서 및 공무원단체 지원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 국경일 및 연말연시 행사 2. 공인관리	

<행정과>

담 당 사 무	비고
3. 보안에 관한 업무 4. 공무원 건강보험·연금 업무 5. 사회공익보험 업무 6. 공무원 공제회 업무 7. 문서수발, 배부 및 통제 8. 기록물 자료관 관리 운영 9. 행정사 관리 10. 국경일 국기사상 운동 11. 전시 남해군자체행동절차 및 업무처리 12.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 13. 사무혁신에 관한 업무 14. 직원 복무 관리 15. 직원 급여 및 원천징수 16.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17. 우편물 관리 18.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지원 19.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20. 노사발전협의회 관련 업무 21. 공무원 후생복지 22. 남해군청상록회 운영 23.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24.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6. 직원 절례조회 27. 청사 발호 28.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관리 29. 그 밖의 일반서무 및 공무원단체와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③ 정보전산에 관한 사항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2. 정보기술아키텍처(EA) 및 정보자산 관리 3.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4.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5. 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운영관리 6.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행정과>

담 당 사 무	비고
7. 빅데이터 관리 및 공공데이터 개방 8.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및 보안성 검토 9. 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10. 지역정보격차 해소 및 군민 정보화교육 11.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④ 행정통신관제 에 관한 사항	
1.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2. 정보통신 고도화 계획수립 및 추진 3. 정보통신망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4.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보안 관리 5. 행정전화(IP) 시스템 운영관리 6. 건축물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7. 공공건축물 정보통신분야 설계검토 및 감독 8.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공공요금 관리 9.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관리 10. 개인정보(영상) 관리계획 수립·시행 11.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솔루션 고도화 12. CCTV 공공요금 관리 13.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2. 부서간 인구시책 기획 조정 3. 인구증가 시책 추진 4.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5. 지역맞춤형 인구시책 발굴 6. 인구시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7. 인구정책 관련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구축 운영 8. 인구정책 지자체 평가 대응 9. 그 밖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내자매도시 관리	
⑥ 군민소통에 관한 사항	
1. 군민과의 소통정책 수립,총괄 조정 2. 군민소통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 등 추진 총괄 3. 군민소통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행정과>

담 당 사 무	비고
4. 군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군민 상생,화합 시책추진 6. 군민, 사회단체 등과 소통교류 활성화 7. 이장 관리 및 지원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 지원 9. 새마을운동 및 의식개혁운동 종합추진 10. 새마을단체,문고 육성,지도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 1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육성,지원 12.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관리 13. 사회단체(법사랑위원회, 해병대전우회,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민족통일협의회 등)지도 및 관리 14. 새마을금고 관리 15. 일제강점하 피해 관련 업무 16. 한국전쟁 희생자 및 유족 지원 17.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18. 지역치안협의회 관리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주민복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사회안전망 구축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사업개발 2. 사랑의 집짓기 집수리 및 119 희망의 집 지원 3. 보훈단체, 명예수당 지원 및 보훈행사 4.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5. 서무, 예산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변경 7. 이웃돕기(후원·결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등)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및 읍면복지회관 운영지원 9.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활동 개발 운영 10.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육성 11. 푸드뱅크 업무 12. 지역복지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13. 저출산 및 고령화 업무 총괄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총괄 15. 통합사례관리업무 16. 긴급지원 및 행복나눔 사례대상자 지원 1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18.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19.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②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 행정의 일반 업무 2.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3. 노인단체 지원 및 지도육성 4.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대학) 확충 및 관리 5.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노인 무료급식 운영 지원 7.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지도 및 관리 8.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 예탁 및 지원 9.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이용신청 10. 기초연금 업무 11. 사회복지법인(노인) 허가 신청 및 지도 감독	

<주민복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12. 노인돌봄서비스(종합, 기본)사업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1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창업 지원 14. 노인계층 자립지원 15.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1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도 및 관리(종사자, 입퇴소자, 기초수급자) 17.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수리 18. 노후생활지원강화사업 19. 홀로어르신 지원사업	
③ 복지대상자 조사와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및 사후변동사항 관리 2. 맞춤형 개별급여 조사 및 사후 변동사항 관리 3. 회귀난치성질환자 조사·통보 4. 복지대상자 정기확인조사 5. 주민상담실 운영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에 관한 사항 1. 기초생활보장업무 계획수립 추진 2.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및 수급자 관리 3.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4. 생활보장(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차상위계층 지원업무 6.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7.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 8.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 9. 노숙자,부랑인 업무 10.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1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2. 지역자활센터 관리 13. 자활프로그램 개발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 관리 15.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주민복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⑤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리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관리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리 5. 장애인한아름센터 운영관리 6.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7.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9.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10.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1. 장애인등록 및 지원 업무 12.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13.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14.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보창구 수리지원사업 15.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17. 장애인등록편의시설사전점검요원협의회 운영 관리 18.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관리	
⑥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및 활성화 지원 3.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지원 4.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 향상 시책 발굴 추진 5.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 6.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7.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사업 8.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및 관리 9.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관리	
<주민복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10.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2. 결혼중개업등록 및 지도관리 1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4. 양성평등기금 운용 및 관리 15.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7.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추진	
⑦ 장사행정에 관한 사항	
1.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사행정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사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매장 및 화장에 관한 업무 사항 5.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설화장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설봉안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연장지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9. 공동묘지 정비 및 재개발에 관한 업무 10. 장사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 주민협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1. 사설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1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 허가(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13. 불법묘지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14.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15. 분묘의 개장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6. 장례업소 지도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장례식장 위탁관리에 관한 업무 18. 남해 수목장(자연장)림 조성 19. 공동묘지 남공평장 묘역 조성 및 공원화 사업 20. 추모누리에 참전용사 묘역 설치 21. 장례식장 영업신고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재무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 2.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대책 추진 3. 지방세 조정 및 부과 4. 국세조정 및 부과 5. 은닉 세원조사 및 발굴 6. 군세심의위원회 운영 7.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8. 지방세 구제업무 9. 지방소득세 부과 등에 관한 업무 10. 지방세수 목표액 관리 및 세수추계 11.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12. 자치법규 정비 13. 지방세정 종합 평가 14. 그 밖의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② 경리·계약·용도 및 복식부기운영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지출 및 경리 2. 국·도비 일상경비 관리 3. 세출결산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5. 세출일계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정리 6. 공사계약 투명성 확보 대책 추진 7.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계약 8.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및 시설공사 하자검사 총괄관리 9. 재정연감 작성 10. 회계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추진 11. 복식부기 회계 기본계획 수립 운영 12.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 13. 복식부기 세입, 세출(일반, 특별, 기금회계 포함) 자료 입력관리 14. 복식부기 수입과 비용에 관한사항 결산 15. 우리군 자산, 부채실사 및 평가 16. 재무제표작성 및 재정운영상태 보고 17. 복식부기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재무과>

담 당 사 무	비고
18. 그 밖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속하는 사항	
③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종합관리 2.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4. 청사, 관사 및 건물 관리 5. 군 청사 신축 추진 6. 총괄재산관리관 소관재산의 취득 및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사항 8. 정기재물조사 9. 공용차량관리 및 운영지도 10. 청사건립특별회계 관리 11. 재정공제 등록 12. 청사 에너지 절약 13. 공유재산 실태조사 14.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5.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16.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사항 1. 지방세(국세) 수납 2. 세입결산, 세입일계표, 현계표처리 3. 체납 지방세징수 특별대책 추진 4.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5. 과오납금 정리 6. 수입증지 출납관리 7. 자금관리 및 배정 8. 군금고 계약, 관리감독 9. 세외수입 징수, 확충에 관한 사항 10. 은닉세외수입원 조사 발굴 11. 세외수입 효율조정 지도 12.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재무과>

달 당 사 무	비고
1. 개별주택 가격조사	
2. 개별주택 이의신청 처리	
3.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	
4. 재산세 과세대상 관리	
5. 재산세 조정 및 부과	
6.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세무조사	
8. 그 밖의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문화청소년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1.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사업 추진 3.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수리 및 지도, 감독 4. 문화원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5.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7. 노래연습장업, 게임장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영화 및 비디오물 등록에 관한 사항 9. 종교단체 지원 관리 10. 드라마, 영화 촬영 유치 11. 김만중 문학상 및 문학제 운영 12.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운영 13.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 14.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15. 작은영화관 관리 16.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17. 작은미술관 관리 운영 18. 그 밖의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②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사업 2. 문화유적 발굴 조사 및 관리 3. 문화유적 지표조사 업무 전반 4. 문화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남해관음포이층무공유적 운영관리 7. 총렬사·거북선 운영관리 8. 명승 및 천연기념물 관리 9.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10. 향교 및 관내사우 운영, 지원 관리 11. 전통사찰 보수 및 관리 12. 무형문화재 운영 관리 13. 서불과차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14. 고려대장경 판각지 관련 사업 전반 15. 노도 문학의 섬 조성 16.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 운영 관리 17. 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 및 정비사업 18. 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위원회 운영 관리 19. 그 밖의 문화재 관련 사항	
③ 평생학습과 화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평생학습시책개발 추진 2. 남해평생학습관 운영 3. 남해평생학습축제 개최 4.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5.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관리 6.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 7. 찾아가는 한글교육 운영 지원 8. 한글백일장 개최 9. 면지역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지원 10.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1.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2. 화전도서관 자료실 및 학습실 운영 13. 자료선정, 구입 및 DB구축, 장서 관리 14. 화전도서관 전산 서버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 15. 주민참여 독서회 조직 및 운영지원 16. 경남독서학교 유지 운영 지원 17.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 추진 18. 책읽는 도시 남해조성 19. 그 밖에 평생학습과 화전도서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지원과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추진 2.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및 국내영어캠프 운영 지원 3. 학생 진로 탐색 및 자유학기제 지원 4. 우수학교 육성지원 계획 추진 5.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6.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바우처 및 맞춤형) 7.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관학협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남해군향토장학회 기탁금 관리 9. 남해군향토장학회 예산집행 및 운영지원 10. 화전학당 운영 11. 초. 중. 고등학교 급식식품비 지원 12. 학교급식 친환경 안전 농산물 지원 13. 남해학숙 관리 운영 지원 14. 고교생 야간 교통 지원 15.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16. 청소년 행사 지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육성 지원 17.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20.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및 지도 감독 21.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22.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고충상담 등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 공공수련시설 건립 24.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관리 	
<p>⑤ 아동복지 및 보육행정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 아동양육시설 운영 관리 3.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 4. 사회복지법인(아동) 관리 5. 결식아동 급식지원 6.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7. 가정위탁 보호사업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8. 가정입양 지원 9. 보호아동 자립지원 및 디딩씨아동장사업 추진 10. 마을어린이 놀이터 관리 11. 드림스타트 운영 관리 12. 아동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 13.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14. 아동수당 사업 15. 보육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6. 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관리 17. 어린이집 설치신고 및 폐지 18.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 19. 어린이집 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지원 20.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21. 어린이집 지도·점검 22.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4. 보육관련 단체 행사지원 및 관리 25. 출산장려지원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환경녹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환경정책 기획·조정 및 기후변화, 자연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업무의 총괄 및 기획·조정 2.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행 및 총괄 기획, 조정 4.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생활 실천 등 분야별 대책 수립 5.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6. 그린시티 육성 7.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및 관리 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9.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10.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11.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관련 업무 12. 성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13. 환경단체(자연보호협의회, 남해환경센터, 생태관광협의회, 남해군그린리더협의회) 지원 14. 환경정책 관련 여론수렴 15. 환경교육진흥법 및 환경보전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6.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1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18. 수질 및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19. 노후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 20.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리 21. 자연환경보전 관리 및 관련 업무 추진 22.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및 생태계 조사 23. 군내 생물종 자원보존계획 수립 추진 24. 자연생태유수마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나비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26. 생태관광 지역 육성 및 활성화 추진 27.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 28.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등 29.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30.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수렵장 운영 31. 특정도서 관리 	

<환경녹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인허가, 지도 및 행정처분 33. 토양오염사고 대처 34.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 폐기물 처리정책과 자원순환 활동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 자원순환 및 재활용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3. 생활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개선대책 추진 4. 재활용분리수거 업무 추진 5. 마늘껍질용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6. 음식물유폐기물 종량제 추진 7. 성진강 하구 부유쓰레기 및 재해 등 발생 폐기물 수거 8. 환경공무직 등 청소종사원 인력 관리 9.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10.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11. 폐기물처리신고 관련(사업장, 건설, 의료, 지정폐기물 등) 12.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및 민원 처리 13. 순환골재에 관련 업무 14.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 사무 15. 대형폐기물 등 수거 및 운반 처리 16. 청소차량 등 장비 관리 17. 폐기물 줄이기 등 관련 군민 홍보 18. 과대포장 상품 점검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19. 석면안전관리법에 관한 업무(슬레이트처리사업 등) 	
③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속분노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2.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지도 및 행정처분 3.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지도 및 행정처분 4. 소음,진동배출시설 인.허가, 지도 및 행정처분 	

<환경녹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5. 비산먼지 신고, 지도 및 행정처분 6. 특정공사 신고, 지도 및 행정처분 7.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지도 및 행정처분 8.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지도 및 행정처분 9.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의 신고 및 관리 10. 악취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4. 환경기술인의 임명,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대기·소음·진동·폐수배출업소의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16.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국오염원 조사 18. 환경재난관리 19. 수질오염사고 20. 환경사범경찰관리 21. 골프장 농약사용 잔류량 검사 2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3. 민간자율 하천감시 24. 수질오염사고 25. 환경재난관리 26. 골프장 농약사용 잔류량 검사 27. 환경감시협의회 관련사무(영산강대권역협의회 등) 28. 환경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29. 환경신문고 운영 30. 미세먼지, 황사, 오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1.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매연신고에 관한 사항 3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업무 3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업무 34.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35.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	
④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 및 운영관리	
<환경녹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2.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및 주변환경영향 조사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4.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5.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대책 수립 추진 6.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7. 공공재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8. 재활용품 매각업체 선정 및 매각대금의 관리 9. 매립장 및 주변지역 방역 소독 10. 일반차량 반입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11.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및 판매 관련 업무 1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협약사항 이행 13. 처리시설내 환경공무직 및 인원의 관리 14.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의 지원	
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도시공원 조성 및 녹화 2. 도시숲 및 녹지공간(생활주변녹화) 조성 3. 가로수 관리(국·지방도 및 간선도로) 4. 임면녹화사업 추진 5. 꽃길·꽃밭 조성 및 관리 6. 자연공원(국,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관리 7. 마을정자 및 주민쉼터 조성 및 관리 8. 근린공원 장기미집행 구역 재정비 및 보상업무 9.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10. 야생화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11. 남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2. 그 밖의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업무	
⑥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1. 산림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2. 경제수목조성계획 수립 추진	

<환경복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3. 사방사업 추진 4.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5. 임도시설의 관광 활용사업 추진 6. 산림기본통계 업무 7. 임업단체및독립가, 임업경영인 육성 지도 8. 임업정책자금 업무 9. 조림, 육림사업 추진 10.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11. 토사석 채취 허가 신고 및 사후관리 12. 임도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13. 어린나무 가꾸기 14.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15. 임업기술 지도 16. 고사리 추산단지 관리 17. 임야 취득 및 관리 18. 등산로 개발 및 관리 1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20. 산사태예방단 운영 및 관리 21. 산지이용 구분 및 평가 22. 보전산지 관리 23. 산림소득사업 지원 및 관리 24. 산림육장 및 자생식물단지 관리 25. 말운산 철쭉군락지 관리 26.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27. 그 밖의 산림조성에 관한 업무	
⑦ 산불예방과 산림보전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총합대책 2. 산불예방진화 인력 및 장비 운영 3.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사업 4. 산림내 일반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5.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6. 공공숲가꾸기 7. 산림내 불법건조물 관리	

<환경복지과>

담 당 사 무	비고
8. 산림보호 단속 9.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 10. 산림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11. 불법산림훼손지 복구 12. 공유임야관리(대부, 변상금 및 병해충방제) 13.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사업신고 14. 벌채 허가,신고 15. 굴취 허가,신고 16. 산림임지조사 업무 17. 해안숲,절자목,노거수 정비 18. 보호수 지정관리 19.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지정관리 20. 우량소나무보전대책 21. 천연림 보호 육성 22.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23. 목재수급에 관한 사항 24. 산지정화, 푸른숲선도원 육성관리 25. 생활권주변 수목진료 민간건설팀 26. 그 밖의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경제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1. 물가종합대책 수립 시행 2.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3.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4. 담배소매인 지정, 지도, 감독 5. 방문, 통신판매업 신고 6. 대부업 및 복권관련 업무 7.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 업무 8. 노동조합 관리 9. 소비자 보호업무 10.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및 소상공인 관리 및 지원 11. 전통신장 관리 12. 상공협의회 운영지원 13.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업무	
②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조정 및 평가 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3. 남해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공공근로사업 운영 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 6.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7.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 9. 직업소개소업 등록 및 관리 10.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11. 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원 12. 일모아시스템(고용노동부) 유지 관리 13.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발굴 14. 마을기업 육성·발굴	
③ 민간자본 투자유치, 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과>

담 당 사 무	비고
1. 민간자본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2. 민간자본 투자유치 업무 4. 투자유치협약 이행사항 관리 5.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창업사업계획(변경 등) 승인 업무에 관한 사항 7. 공장설립(신설, 증설, 이전 등) 승인 업무에 관한 사항 8. 공장등록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공장설립정보망(FEMIS) 관리 및 운영 10.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업무 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추진 13. 산업단지(국가, 일반, 농공) 조성 및 관리 14. IGCC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15. 경상남도 추천상품(QC) 관리 16.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해양수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수산행정기획 조정과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행 2. 수산업무의 기획조정 3.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 4. 과 서무, 경리 업무 5.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 6. 귀어,전업어가 지원 및 관리 7.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8.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9. 수산업경영인 등 수산단체 지도 육성 10. 어업인 교육 11. 보물섬 낚시대회 추진 12.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및 추진 13. 영어조합법인 운영관리 14. 해양수산사업 조사 및 예산신청 15. 자유무역협정(FTA)업무 추진 16. 북항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17. 어촌자원복합화사업 추진 18. 어촌계관리 및 어업조정 19. 해당 업무외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② 연근해어업과 수산업지도에 관한 사항 1. 어업질서 확립대책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 2. 업종별 어업 분쟁 조정 3. 해상경계 법제화 및 공동조업구역 지정 4. 불법어장 철거 및 정비 5. 연근해어업 안전조업 지도 6. 어업지도선 운영 7. 구획어업허가 및 지도 8. 연근해어업허가 및 관리 9. 어업신고 및 관리 10. 어선감적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11. 어선 어업인 편의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12. 어선 관련사업 추진 13. 어선등록 및 관리 14. 어선 건, 개조 발주허가 및 관리 15. 어선표지판 제작 및 부착 16. 어획물운반업 등록 17. 범칙어선 행정처분 18. 수산법령 위반어선 과태료 처분 19.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20.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21. 친환경에너지결광장비 보급사업 22. 어구 어망 재해대책 및 복구사업 23. 미등록, 무허가 어선 정비 24.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 25.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26. 어선,어업인, 어선원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27. 수난구조 활동 참여자 지원	
③ 양식어업과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 수산물 생산 유통지도 2. 수산물의 양식사업 추진 3. 양식어장 피해조사 및 복구 4.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추진 5. 연안어장 예찰 및 피해예방지도 6. 양식어업 면허 및 관리 7.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 및 관리 8. 양식장 관리선 지정 및 승인 9. 육상양식 중요생산어업허가관리 및 피해대책 10. 수산양식물 재해예방대책 및 관리 11. 수산물가공업 등록 및 지도 단속 12.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관리 13.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관련 업무 14. 수산물 가공 포장사업 15.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 16.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해양수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17. 수산물 위판장 권리 1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관리 19. 남해 축방멸치 브랜드화 사업 20. 지리적표시제 특허출원 및 포장디자인 개발 21. 외해양식 및 미래형 청정양식기술 개발 보급 22. 그 밖의 수산물양식에 관한 사항	
④ 연안 및 어항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련 협의 3.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 및 인허가 4. 공유수면 매립 관련 업무 5.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 6. 연안정비사업 추진 7. 국가어항 개발사업 8. 해양심층수 개발 9. 해양항만 관련 업무 전반 10. 어항 시설 유지 및 확충 사업 11. 어항 관리 실태조사 12. 어항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 13. 증장기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협의 14. 어항시설을 관리 및 어항 사용 승인 15. 다기능어항 개발 16. 공설해수욕장의 신규 지정 17. 공설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및 평가 18. 해수욕장의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 19. 피서리나 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20. 해양낚시공원 조성 및 관리	
⑤ 어업보상 및 해양보전에 관한 사항 1.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업무추진 2. 무인도서 관련 업무 3. 어업피해보상대책 수립 및 지원 4. 남갈담 주변지역 지원 5. 해양 지명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6. 적조피해예방 및 방지대책 추진 7. 어장환경정화사업 8. FDA지정해역 관리 9.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 10.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11. 유류오염어업 피해조사 및 보상 12. 연안폐유저장시설 설치 13. 바다청소 및 바다환경미화원제 운영 14. 연안어장환경보전 15. 방지폐선 정비 16. 해안쓰레기 처리업무 17. 패각 재활용 처리대책 추진 18.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19. 바다오염 방지대책 수립시행 20. EEZ주변지역 관리 21. 양식어장 정화 관리 22. 연안어장환경개선 대책 추진 23. 청정바다 해양보전 오투오 처리시스템 운영 24. 연안변 해적생물(불가사리 성게) 구제 25. 부유쓰레기 사전차단막 추진 26. 연안변 방치 페스티로폼 수매 27. 해양쓰레기 오투오처리시스템 구축 28. 항망청소선 운영 관리	
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율관리어업 지정 및 관리 2.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3. 고래자원 관리 4. TAC 제도운영 및 관리 5.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전반 6. 신품종 수산양식사업 개발 7.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관한 사항 8. 수산동식물 이식 승인 및 지도 9. 어촌계 마을어장 확대 추진 10. 마을어업 면허 및 어장관리 11. 유어장 지정 및 관리	

<해양수산과>

담 당 사 무	비고
12. 마을어장 관리선 지정 및 관리	
13.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연안, 소규모, 바다숲, 해중림)	
14. 마을어장 개발 및 소득원 조성사업	
15. 수산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16. 바다의 날 행사 추진	
17. 인공어초시설 사업	
18. 육성수면 지정 및 관리	
19.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도시재생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3. 용도지역, 지구의 결정(변경) 4.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5.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신설) 6.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 7.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8. 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LURIS) 운영 관리 11.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 구축 및 운영 12.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및 운영 1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14.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 15.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공 및 감독 1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보상 및 보존등기 17. 광양만, 진주권 광역권 개발사업 18.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9. 은천업무에 관한 사항 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도로 관리 21. 도시통계 22. 그 밖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②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추진 2. 읍면소재지 농어촌형 도시재생사업 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 군청사 이전 및 행정타운조성 5.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6. 그밖의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③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1. 도시경관계획 수립(변경)	

<도시재생과>

담 당 사 무	비고
2.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3.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4. 공공디자인조례, 경관조례 개정 5.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운영관리 6.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7.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연장 8. 불법광고물 단속,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9. 옥외광고물 통계자료 10. 지정계시대 신설, 유지관리 11. 간판정비사업 및 거리미관 정비사업 12.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3. 옥외광고물 조례, 옥외광고기금 조례 운영 14. 광고업종사자 및 광고협회 지도·감독 15.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 16. 공동주택, 빈집정비조례 운영 17. 주택사업의 승인 18. 친환경 제로에너지주택 모델 보급 19. 마을회관 건축지원 업무 20. 사업승인 공동주택 관리 2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2.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2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24.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주거급여, 주택개보수 지원) 25.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관리 26.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27.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28. 남해안권 발전 개발 사업(관광자원화) -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상주은모래비치)	
④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2.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3.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4.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5. 건축물대장증명발급 및 전산화사업	

<도시재생과>

담 당 사 무	비고
6. 건축물대장 생성,말소,표시변경,정정,분리·결합 신청 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8.건축물 부존재증명신청 9.건축물철거신고 10.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취소(청문회 개최) 11.공사중 현장지도 및 현장관리인 배치 점검 12.공사관리자 지정 13.건축관계자 변경허가(신고) 14.공작물축조신고 15.건축물대장 등기축탁 16.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신고 및 현황관리 17.진정,고충,건의민원 해결 18.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	
⑤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농지전용허가 협의 타용도일시전용허가 용도변경"에 대하여 - 건축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준공까지 처리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허가 및 준공시 소관부서에 통보 2. "산림형질변경허가, 신고, 협의,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3. 불법전용 산림의 지목 현실화 4. 허가지내 불법행위 관련부서 통보 5. 개발행위허가	
⑥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1. 건축·주택통계 2. 위법·불법 건축물 단속 및 지도계획 수립 3. 건축지도 감독 및 건축사 관리 4. 건축허가 공동주택 관리 5. 건축조례 운영 6. 미분양주택관리 7. 건축분야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심사, 공사감독, 준공검사 8.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9. 건축분야 특수시책 시행(제도개선 등) 10. 사전상담제 운영 및 고충건의민원 해결	

<도시재생과>

담 당 사 무	비고
1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정비) 12. 빈집현황 관리 13.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14. 아름다운건축물 가꾸기사업 15. 에어컨(실외기) 관리 16. 건축행정 건실화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건설교통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건설관리와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업무 종합기획조정 2. 건설기계 및 조종사 면허관리 3. 건설공사용 자재품질관리 4. 건설기계동원계획수립 5. 도선 관리 6. 일반, 전문 건설업 관리 7. 동절기 공사중단 중지 및 승인업무 8.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9. 건설공사 실명제에 관한 업무 10.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11. 창선유람선 관리운영	
②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 토지개량사업의 조사측량 2. 농업용지하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구획 및 일반 경지정리사업 추진 4. 관개시설 개·보수 5. 개간허가 및 지도 6. 각종 농지개량조사의 집행 감독 7. 방조제, 소류지, 도수로, 구거 관리 8. 양수기의 이용 및 보존 관리 9.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 10. 농업기반시설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관리 11. 농업, 농촌 종합개발 사업 12. 밭기반정비사업 13. 용·배수로등 관개시설 개·보수 14. 농의 밭작물 재배지원 15. 수리시설 개·보수 16. 재해위험 소류지 개·보수 17.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8. 재해위험 소류지 개·보수 19.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건설교통과>

담 당 사 무	비고
20. 준영구 논두렁 설치 21.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2.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긴급복구 23. 한해대책 24.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25. 수리계 유지관리 26. 그 밖의 농지조성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업무	
③ 토목·건설공사와 도로에 관한 사항 1. 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감독 2. 합동설계단 운영 3. 국도(제2남해대교) 4차선 확·포장 추진 4. 도로 공작물설치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5. 노선표지판 관리 6. 마을안길 개설 및 확·포장사업 7. 도서 오지개발사업 8. 군도·농어촌도로 개발사업 9.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접도구역 관리 10.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관리 11. 노상적치물 및 과적차량 단속, 도로굴착 관련 업무 12. 자동차 특별회계사업(위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13. 남해대교 및 창선, 상천포대교 야간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4. 남해대교 경관 조명사업 추진 15. 도로 수로원 관리업무 16. 도로 설해대책 업무추진 17. 도로별 교통량 조사업무 18. 군도, 농어촌도로, 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이전 등기 19. 국도 확장에 따른 보행자 안전 통행로 확보 20. 그 밖의 토목건설에 관한 업무	
④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2.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 3.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 4.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	

<건설교통과>

담 당 사 무	비고
5. 지역개발사업장 추진(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6.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개발) 7.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전원마을) 8.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립 9.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10.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단위 종합, 경관, 생태, 환경, 소득, 문화, 복지) 11.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및 기본계획 수립 12.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 13. 그밖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⑤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1. 교통지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통실시 총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마을버스)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일반, 개별, 용달화물) 9. 택시 운송사업(개인, 일반) 및 택시미터 검정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11.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항 12.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13. 이륜자동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주, 정차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5.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 16. 교통불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 마을, 전세, 특수여객, 택시) 19. 버스업계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0.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과>

담 당 사 무	비고
21.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22. 모범운전자 등 비영리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4. 관광택시제 도입 시행 25. 노선버스 배차 간격 조정 등 이용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27.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에 관한 사항 2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안전총괄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재난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3.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4.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안전문화운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6.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재난상황근무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9.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10. 사회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 1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12.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업무 14.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 15. 시특법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16. 재난대응 매뉴얼 총괄 관리 17. 재난안전총사자 교육 관리 18.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운영 총괄 1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업무 총괄 관리 20. 지하안전관리 총괄 21. 재난관리실태 점검 추진 22. 재난관리자원 총괄 관리 23. 재해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4. 지역안전도 및 지역안전지수에 관한 업무 25. 풍수해보험 제도 운영 26.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② 재해복구와 지원에 관한사항 1. 재해. 재난복구계획수립 2. 재해. 재난피해 조사에 관한 업무 3. 응급복구 지원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	

<안전총괄과>

담 당 사 무	비고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및 감독, 토지보상 6.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공고 7. 재해기복보존에 관한 업무 8.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관리, 정비사업 추진 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에 관한 업무 1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 및 감독, 토지보상 11. 수방자재관리 및 주요방재시설물 지정 관리 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운영 13. 재해피해 원인분석 및 대응책 마련 14. 지진·내진 대책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15. 가뭄 및 상습가뭄지역 대책 추진 16. 성산우수저류 시설 및 중앙배수펌프장 관리 17. 수해복구 사업 추진	
③ 하천관리에 관한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 2.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관리 3. 지방하천정비사업 설계 및 감독 4. 지방하천 점사용허가 및 관리 5. 지방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6.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 및 등기 7. 지방하천 춘,추계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8. 지방하천 준설사업 설계 및 감독 9.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 소하천정비사업 설계 및 감독 11. 소하천 점사용허가 및 관리 12. 소하천 춘,추계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13. 소하천 미불용지보상 및 등기 14. 하천공사 부지보상 및 토지수용 15. 법정하천구역 불법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6. 법정하천 외 정비사업 설계 및 감독 17. 하천골재채취 관련업무 18. 동천물놀이장 유지관리	
④ 민방위 업무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	

<안전총괄과>

담당 사무	비고
2. 민방위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3.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	
4. 의용소방대 업무 지원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6. 전시 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	
7. 정부, 자체 연습의 계획조정 및 비상대책업무	
8. 민방공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	
9. 민방위 비상시설 및 장비 관리	
10. 민방위경보 운영 및 관리	
11. 지역예비군 육성 및 지원	
12.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13. 국가기반 체계 보호에 관한 업무	
1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소 사무분장표(제5조 관련)

<보건소>

담 당 사 무	비고
① 보건행정의 기획조정과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건행정의 기획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3.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업무 4.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 예산 및 회계업무 6. 민원, 진료업무(일반, 치과, 한방) 7.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복무관리 8. 공공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9. 보건소 응급 및 사업용 차량 관리 10. 보건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관리 11. 공사 및 용역 등 계약 입찰 업무 12.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13. 문서수발, 공인관리 14. 기록물관리 15. 검진사업(일반검진, 출장검진, 영유아, 학생검진 등) 16. 보건복지 총무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 음주폐해예방 사업 3. 신체활동 건강증진 사업(주민걷기 활성화 지원 등) 4. 영양 및 비만관리 사업 5. 금연클리닉 운영 6.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7.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철분제 등 지원 사업) 8.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소>

담 당 사 무	비고
9. 모자보건 의료비 등 지원 사업(미숙아 등) 10. 취약 전 어린이 시력검진 사업 11.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12.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13. 지역아동센터건강주치의 사업 14. 한의약건강증진 15. 국민건강영양조사 16. WHO 건강도시 17.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8.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19. 어르신들니보급사업 20.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21. 구강보건사업(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22.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23.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③ 방문건강서비스에 관한 사항 1. 맞춤형 방문간호 관리사업 2.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3. 거동불능 및 장애인 방문재활사업 4. 지역사회중심재활센터 운영 5.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6. 심뇌혈관질환 지역사회 홍보사업 7.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 조기발견 사업 8.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 사업 9. 지역사회건강조사 10.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11.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보건소>	
담 당 사 무	비고
12. 희귀난치병의료비지원 13.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14.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15. 국가암검진 16. 재가암 환자관리 및 치료비지원사업 17.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18. 호스피스사업 19.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20. 그 밖에 방문 건강서비스에 관한 업무	
④ 감염병관리 및 의료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1. 감염병 관리·대응 업무 2. 에이즈, 성병 예방 관리 3. 결핵 환자 관리와 잠복 결핵 검진 4.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민원 처리, 지도점검 5. 마약류 관리 업무 6. 예방 접종 지원 업무 7. 방역소독에 관한 업무 8. 의무소독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 9. 다수환자 발생 등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 업무 10. 생물테러 예방 관리 11.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관리 12. 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리 13.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14. 임상병리 검사 15. 헌혈사업 업무 16. 장기이식 등록관리 업무 17. 의료기기 민원 처리 및 관리	
<보건소>	
담 당 사 무	비고
18. 식품의약품 총무계획 수립 및 시행	
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1.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업소 인·허가 관련 업무 2. 위생단체관리 3.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운영 4. 유통식품 수거검사 관리(특별관리대상, 방사능 등) 5. 식품진흥기금관리 6.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7.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 업무 8.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관리 9.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시책 추진 10. 식품·공중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11.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 관리 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3. 우수외식업지구 육성관리 14.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 저감화 사업 15.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위생안전관리 16. HACCP제도 운영관리 및 식품 표시기준관리(GMO등)	
⑥ 치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신규)	
1. 치매상담·등록관리사업 2. 치매조기검진사업(일반 검진·고위험군 집중검진) 3. 치매예방교실 운영 4. 치매 인지강화교실 운영 5. 치매쉼터 운영 6. 치매가족교실 운영 7. 치매카페 및 자조모임 운영 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견소>

담 당 사 무	비고
9.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10.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지원 사업	
11.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12. 지문 등 사전등록관리사업	
13. 치매예방 교육·홍보사업	
14. 치매파트너 및 등대지기 양성 사업	
15. 치매극복 선도기관/학교/단체/도서관 양성 사업	
16. 치매 인식개선사업(치매극복의 날 등)	
1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18.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19.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운영	
20. 생활 터 치매안심마을 조성	
21. 정신건강증진사업	
2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3. 자살예방사업	
24. 그 밖에 치매 및 정신보건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3] <개정 2018.07. >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표(제8조 관련)

<농축산과>

답 당 사 무	비고
① 농업·농촌 발전방안 기획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농업행정 기획, 서무일반, 인사, 회계, 재산관리 등 2. 농림축산사업 신청 및 관리 등 3. 농업 및 농촌 발전방안 기획 수립 등 4. 농업경영안정화 지원에 관한 시책개발 등 5.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6. 농업법인 및 농업회사 설립 지원 등 7. 농업인 안전공제 및 자녀학자금지원 등 8.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개발 등 9. 농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 등 11.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등 12. 농업인의 날 행사 13. 농업교육훈련시설(대회의실) 운영 및 관리 14. 농업기술센터 홍보기자재 관리 및 운영	
②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1. 귀농자 안정 정착 및 저소득농가 자립 지원대책 2. 도농간 자매결연 농가 및 농장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 3. 귀농귀촌 종합지원계획 수립 4.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교육·상담 5. 귀농 창업지원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6. 귀농귀촌 센터 운영 및 관리 7.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8. 귀농인 농업기술 교육 9. 그 밖에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③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1. 유통업무 관련 유관기관 협동사업 추진 2. 농특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육성 지원 3. 농특산물 판매 및 유통망, 시설운영, 구조개선 4. 농업관측, 정보 분산 및 홍보 5.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농축산과>

답 당 사 무	비고
6. 농특산물 수출 지원 및 시장개척 등 7. 정부양곡 관리에 관한 사항 8. RPC 관리 및 육성 운영 9. 양곡 가공업 신고, 유통단속 등에 관한 업무 10.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11. 농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2. 농산물 집하장, 특산물판매시설 관리 운영 등 13. 로컬푸드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 안전성(GAP)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④ 축산 정책 및 축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 축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기획 등 2. 축산분야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3.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원 4. 가축통계조사 5. 보물성 남해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분야 새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 7.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관한 사업 8.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관리 등의 업무 9. 축산업, 초지 등록 허가 및 관리 지도 10. 소, 절소 생산 이력관리제 등 11. 양돈·양계·낙농산업 육성 및 지원 등 12. 양봉, 곤충, 기타 가축산업 육성 및 지원 등	
⑤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복지분야 정책 기획 등 2.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등 3. 가축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구제역 및 시 방역 대책 등 5. 축산차량 등록제 6. 공동방제단 및 공수의사 운영 관리 7. 축산물 영업장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 8.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등 9. 동물등록 및 보호관리 등 10. 축산분야 유해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표(제8조 관련)

<농촌활력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농촌진흥정책, 농업기술 홍보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 과 사무 및 예산·경리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기관 관련 업무 지도 기획 3.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품목별농업인연구회, 4-H회 등 학습조직체 육성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5. 후계농업경영인, 청년후계농, 감소농 등 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6.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7.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교육, 보물섬농업대학 등 운영 지원 8. 최고 농업경영자 육성 및 한국농업전문학교 업무 지원 9. 농업분야 신기술 교육 및 홍보 10. 농어가도우미 지원 11.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12.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② 체험마을 및 관광농업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관리 2. 남해군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육성 지원 관리 3.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지원 4. 농촌체험마을 축제사업 지원(마케팅 등) 5.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및 인적역량강화 지원 6. 지역청년일자리(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7. 농어촌민박사업 인·허가 및 관리 8.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도·단속 및 교육 9. 실증시범포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10. 새소득작물 재배기술 개발 11.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개발업무 12.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교육장화 13. 보물섬식물원 운영, 관리 14.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15. 농업경영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16. 농업정보화 사업관련 업무(농업기술원, 농진청)	

<농촌활력과>

담 당 사 무	비고
17. 농어촌 휴양지사업(관광농원) 육성 관리지도 18.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③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의·식·주 등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1. 농촌여성 생활문화 및 전문기술 교육 2.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3. 농촌여성 창업 및 농외소득 개발 지원 4. 생활개선회 육성(읍면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5.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6. 식문화 교육장 및 농촌생활문화관 관리 운영 7.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8.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9.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농장주 역량강화 10.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1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2. 6차 산업 및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농촌진흥 분야) 13.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14. 가공 마케팅 기술지원 및 농산물가공연구회 육성 15. 우리 쌀 이용 가공품 기술 및 바른식생활 교육 지원	
④ 농업기계화 촉진 및 임대 농업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신축 및 관리 3. 농업기계 사후봉사사업소 지정 및 관리 4. 산업기능요원(농업기계) 관리 5. 농업기계 기술 및 안전, 현장 실습, 자격증 취득 등 교육 지원 6.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 교육 7. 농협, 농작업 대행용 농업기계 현장 기술 지원 8. 주산지일관기계화 농업기계 임대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등 관리 9. 맞춤형 중소형 및 신기종 농업기계 보조 지원 10.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11.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지원 12. 마을공동 농업기계 보관창고 개보수·신축 지원 및 관리 13. 임대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및 차량 구입·관리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표(제8조 관련)

<농업기술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1. 친환경 농업의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품질인증 지도 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육성 총괄 5. 친환경 농업단체 육성 및 지도 6. 생태농업단지 조성 7.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8.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실천 운동 9.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추진 10. 친환경 농자재 및 정보지 지원 11. 토양정밀 검정 및 시비법 개선지도 12. 농토배양 및 퇴비생산시설 추진 13.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14.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5. 부정·불량 비료 유통 단속 16.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및 관리 17. 친환경 유기농업자재에 관한 사항 18. 비료 생산 관리 및 판매 관리 운영 19. 친환경농업 교육 및 인증 활성화 20. 퇴비공장 운영관리 지도	
② 식량작물 생산안정을 위한 새기술 보급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1. 식량작물 생산 계획 수립 2.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 및 현장 지도 3. 농작물 종자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종자, 농약 판매업소 관리지도 5. 식량작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6. 병해충 예방 및 방제기술 지도 7. 벼 병해충 기본예찰단 운영 8. 식량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 9. 식량작물 재해 조사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과>

담 당 사 무	비고
10. 농촌일손돕기 계획 수립 및 추진 11. 쌀전업농 육성 관리 지도 12.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13.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 14. 정부보급종 신청 및 공급 15. 토종 농산물 보전 육성 16. 발작물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7. 발작물 종자 보급 18. 발농업 직불제 사업추진 19. 우리밀 육성 지원 20. 농업기상 분석 및 정보 제공 21.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운영관리 22.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추진 23. 감자조직배양실 운영관리	
③ 원예작물 및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1. 원예작물 행정·기술지원 업무 종합계획 수립 2.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기술 지도 3. 약용·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4. 지역특화 및 원예작물 농가 보급 및 지도 5. 첨단 새기술 시범사업 보급 6. 과수·화훼·노지채소 재배기술 보급 7. 도시농업 육성 8. 원예작물 수출단지조성 및 재배기술지도 9. 원예실증시범포 운영 10.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지도 11. 원예작물 재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13. 보물섬 남해시금치 명품클러스터 사업 14. 특화작목 선정 및 원예작물에 관한 업무 15. 우량종묘 생산 관리(원예작물)	
④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생산 및 산업화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 남해마늘의 증장기 경쟁력제고 종합계획 수립	

<농업기술과>

담당 사무	비고
2. 마늘재배기술 개선 및 현장지도에 관한 사항	
3. 마늘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업무 추진	
4. 마늘파종, 수확, 선별 등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보급	
5. 남해마늘경쟁력 제고 사업추진	
6. 마늘 우량종구 확보 및 생산, 증식 보급에 관한 사항	
7. 마늘재배 전문기술 교육	
8. 마늘 실증 시범포 운영	
9. 마늘관련 협의회 조직 운영	
10. 마늘재배법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사업 추진	
11. 남해마늘 차별화 사업 추진	
12. 마늘 품질향상에 관한 시험 연구사업	
13. 남해마늘연구소 운영 및 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4. 남해마늘핵심역량 강화 사업	
15.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 관리	
16. 마늘명품화기금 관리 운영	
17. 마늘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18. 마늘가공식품개발 지역특화사업	
19. 남해마늘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별표4] <개정 2018.07. >

사업소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체육시설사업소>

담 당 사 무	비고
① 체육행정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 공인, 보안 2. 예산, 경리, 계약, 물품관리 3. 체육시설물 예약시스템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 4.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5. 공공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6. 생활체육공원의 조성 및 관리 7. 게이트볼장(전천후) 조성 및 관리 8. 그라운드골프장 및 파크 골프장 조성 및 관리 9. 골프장(남해힐튼, 장포) 운영 지원 10. 스포츠파크 및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11. 실내체육관 관리 및 운영 12. 프랑스 어린이왕자 테마파크 남해공원 유지 13. 그 밖의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체육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체육진흥 및 잔디산업에 관한 사항 1.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 2.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3. 군내 체육대회 운영지원 4.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업무지원 5.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등 체육관련단체 관리 6. 학원체육 지원 7.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8. 군청 직장팀 운영 및 관리 9. 잔디재배 농가 지도관리 전반 10. 남해잔디 영농법인 관리 및 지도 11. 남해잔디 아카데미 운영 3개월코스 12. 남해잔디 포럼 운영 및 관리 13. 남해잔디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 14. 남해잔디 구매희망자 접수 및 대상지 지도 15. 남해잔디 식재지 사후관리 및 지도	

<체육시설사업소>

담 당 사 무	비고
16. 남해잔디 특허출원 및 등록 관리 17. 남해잔디 친환경 품질보증서 취득 및 관리 18. 남해잔디 육성과 브랜드개발에 관한 사항 19. 남해잔디 재종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금잔디 재배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잔디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스포츠파크 내 운동시설의 잔디 및 공원관리 23.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24. 상주체육공원과 읍면단위 체육시설의 잔디 및 공원관리	
③ 레포츠와 시설에 관한 사항 1. 레포츠산업 개발계획 수립 2. 요트, 마리나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3. 남해요트학교 관리, 운영 4. 국제, 국내 요트대회 개최 5. 항공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6. 경항공기 활주로(이, 착륙장 등) 등 기반시설 조성 7. 비행클럽 유치 8. 항공레저 관련 국제, 국내 대회 개최 9.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 10.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 추진 11. 각종 레포츠대회 유치 12. 그 밖에 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별표4] <개정 2018.07. >

사업소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상하수도사업소>

담 당 사 무	비고
①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및 상하수도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 사업소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사업소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총괄) 3. 상·하수도 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 4. 상·하수도 특별회계 경영평가 5.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산관리 6.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7.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협약 관련사항 8.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 9.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 10. 분노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일반회계 세입세출관리 12. 상·하수도 조례 13.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사무, 공인, 보안, 경리, 물품관리 14. 그 밖의 상·하수도담당 분장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상수도사업 계획 및 시행 2.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3. 취·정수장 운영 관리 4.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5.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6. 상수도 시설 공사 7.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8. 노후관 교체공사 및 관망 관리 9.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관리 10.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11. 상수도 비상급수대책 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3. 전용 상수도사업 설치 인가에 관한 사항 14. 절수기 설치 및 절수사업 추진 15. 계량기 교체 및 관리 16. 누수탐사 및 보수	

<상하수도사업소>

담 당 사 무	비고
17.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상수도 대행업 지정 및 관리 19. 그 밖의 상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③ 하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1. 공공하수도사업 계획 및 시행 2.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3. 소규모 마을하수도사업 시행 4. 하수관로 정비사업 5.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7.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수리 8. 배수설비 설치 대행업 지정관리 9.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10.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관련 영업 인허가 11.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단속 및 처분 12. 하수도 대행업 지정 및 관리 13. 그 밖의 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별표5] <개정 2014.12.30>

읍.면 사무분장표

<읍.면>

담 당 사 무	비고
○ 서무, 기밀, 공인관리, 인사,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리의 감독, 교육, 회계 선거, 통계, 공보선전, 문화재보호, 기타 문화예술행사	
○ 세원조사보고, 지방세·세외수입고지서교부, 세무제증명발급, 체납세징수 재산세 과세대장정리, 건축물 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 복지대상자 초기상담및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및관리, 청소 환경관리,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관리, 여성복지	
○ 제적및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 민원실전용 공인관리, 인감, 제증명발급, 수형인명부관리,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운영, 민방위, 재난관리, 기타 업무	
○ 농업지식과 기술의 지도보급, 식량, 농지, 산불예방, 계량, 지역사회개발 노정, 기타 산업업무	
○ 도로, 교량, 하천, 수질보존, 그 외 국토 및 자연자원의 개발·보전 이용 자연재해 방지대책,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사무, 부역개량, 새마을사업 농지개량, 토목, 관광업무, 기타 건설	

남해군 공고 제2018 - 86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국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 (안 제2조)
 - 공무원 정원의 총수 : 597명 ⇒ 60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84명 ⇒ 594명

-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4조)

직 급 별	기 관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 면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총 계		607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580						
	4급	3	3					
	4~5급	1			1			
	5급	32	13	3		4	2	10
	6급이하 소계	544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3						

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별표)
-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Empty space for submission content]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7명” 을 “60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4명” 을 “594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97명</u>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84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총수) ----- ----- <u>607명</u>----- -----.</p> <p>1. ----- : <u>594명</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 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계		607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580						
4급		3	3					
4~5급		1			1			
5급		32	13	3		4	2	10
6급이하 소계		544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3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현					개					
		총계	본청	회의 사무과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본청	회의 사무과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597					607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570					580					
4급		1	1				3	3				
4~5급		3	2	1			1		1			
5급		31	11	3	1	4	32	13	3	4	2	10
6급이하 소계		535					544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1					1					
기록연구사		1					1					
농촌지도사		23					23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해 군 공 보

2018년 7월 27일

제 612 호 (143)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부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과	면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부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과	면		
						보건소	농업기 술훈센타										보건소	농업기 술훈센타					
일반직	6급	행정·복지·시설	1								일반직	6급	행정·복지·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시설	1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운전	2	1	1						일반직	6급	운전	2	1	1							
일반직	6급	사무운영	1	1							일반직	6급	사무운영	1	1								
일반직	7급	합계	172	86	3	32	3	9	7	32	일반직	7급	합계	172	86	2	32	4	9	7	32		
일반직	7급	행정	34	21	3			2	2	6	일반직	7급	행정	32	20	2			2	2	6		
일반직	7급	세무	6	2					1	3	일반직	7급	세무	6	2					1	3		
일반직	7급	사회복지	10	3					1	6	일반직	7급	사회복지	10	3					1	6		
일반직	7급	전산	1	1							일반직	7급	전산	1	1								
일반직	7급	공업	5	4						1	일반직	7급	공업	5	4							1	
일반직	7급	해양수산	7	7							일반직	7급	해양수산	7	7								
일반직	7급	보건	12			12					일반직	7급	보건	12			12						
일반직	7급	의료기술	3			3					일반직	7급	의료기술	3			3						
일반직	7급	간호	7			7					일반직	7급	간호	7			7						
일반직	7급	보건진료	7			7					일반직	7급	보건진료	7			7						
일반직	7급	환경	1	1							일반직	7급	환경	1	1								
일반직	7급	시설	10	8				1	1		일반직	7급	시설	10	8				1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	4	1						3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	4	1							3	
일반직	7급	행정·전산·농업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농업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	8	4				1	3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	8	4				1	3			
일반직	7급	행정·사서	1	1							일반직	7급	행정·사서	1	1								
일반직	7급	행정·농업	10	4				1	5		일반직	7급	행정·농업	10	3			1	1	5			
일반직	7급	행정·농업·복지	5	2				1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복지	5	2				1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수리	2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수리	2				2					
일반직	7급	행정·보건·의료기술	2			2					일반직	7급	행정·보건·의료기술	2			2						
일반직	7급	행정·환경	2	1				1			일반직	7급	행정·환경	2	1				1				
일반직	7급	행정·시설	9	8				1			일반직	7급	행정·시설	10	9				1				
일반직	7급	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농업·보건	1	1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농업·보건	1	1							1	
일반직	7급	행정·복지·시설	2	2							일반직	7급	행정·복지·시설	2	2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1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1	1		
일반직	7급	운전	6	6							일반직	7급	운전	6	6								
일반직	7급	통신운영	1	1							일반직	7급	통신운영	1	1								
일반직	7급	신박항해운영									일반직	7급	신박항해운영										
일반직	7급	전기운영·기계운영	2				1	1			일반직	7급	전기운영·기계운영	3	1			1	1				
일반직	7급	복지	1	1							일반직	7급	복지	1	1								
일반직	8급	합계	140	77	2	15	5	8	4	29	일반직	8급	합계	137	73	1	17	5	8	4	29		
일반직	8급	행정	28	18	2			2	1	5	일반직	8급	행정	25	16	1			2	1	5		
일반직	8급	세무	3	2						1	일반직	8급	세무	3	2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3	5					1	7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1	3					1	7		
일반직	8급	전산	1	1							일반직	8급	전산	1	1								
일반직	8급	사서	1	1							일반직	8급	사서										
일반직	8급	농업	5	1			4				일반직	8급	농업	4				4					
일반직	8급	복지	3	2				1			일반직	8급	복지	3	2					1			
일반직	8급	해양수산	4	4							일반직	8급	해양수산	4	4								
일반직	8급	환경	1	1							일반직	8급	환경	1	1								
일반직	8급	보건·세무	1	1							일반직	8급	보건·세무	1	1								
일반직	8급	의료기술	7			7					일반직	8급	의료기술	7			7						
일반직	8급	보건진료	5			5					일반직	8급	보건진료	5			5						
일반직	8급	시설	9	5						4	일반직	8급	시설	11	7							4	
일반직	8급	행정·세무	5	2						3	일반직	8급	행정·세무	5	2							3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	7	2				1	4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	7	2				1	4			
일반직	8급	행정·농업·시설	6	2			1		1	2	일반직	8급	행정·농업·시설	6	2			1		1	2		
일반직	8급	행정·전산	2	2							일반직	8급	행정·전산	2	2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전산	1	1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전산	1	1								
일반직	8급	행정·환경	3	1				1		1	일반직	8급	행정·환경	3	1					1		1	
일반직	8급	행정·시설	11	11							일반직	8급	행정·시설	10	10								

남 해 군 공 보

(144) 제 612 호

2018년 7월 27일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공급기술훈센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농업·농림	1	1						
일반직	8급	농업·농지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송통신	2	2						
일반직	8급	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8급	보건·간호	3			3				
일반직	8급	행정·보건·환경	3	2				1		
일반직	8급	운전	5	5						
일반직	8급	전하상담운영	1	1						
일반직	8급	공업	6	2				2		2
일반직	8급	기계운영	1					1		
일반직	9급	합계	88	52	1	4	1	2	28	
일반직	9급	행정	23	14	1					8
일반직	9급	세무	4	2						2
일반직	9급	사회복지	18	11				1		6
일반직	9급	농업	1							1
일반직	9급	해양수산	1	1						
일반직	9급	환경	1	1						
일반직	9급	시설	5	2						3
일반직	9급	방재안전	2	2						
일반직	9급	의료기술	1			1				
일반직	9급	행정·전산	1	1						
일반직	9급	행정·시설	3	3						
일반직	9급	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9급	행정·세무·전산	2	1						1
일반직	9급	행정·사회복지	5	5						
일반직	9급	행정·해양수산	1	1						
일반직	9급	행정·전산·시설	1	1						
일반직	9급	행정·농업·농지	5	2						3
일반직	9급	행정·전산·보건	1			1				
일반직	9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9급	운전	5	1		2	1			1
일반직	9급	전기운영	1	1						
일반직	9급	사무운영	4					1		3
일반직	9급	공업	1	1						
일반직	9급	농기계교관	1			1				
행정직 계	별정6급상당	일반비서	1	1						
연구직 계	연구사	기록연구	1	1						
지도직 계	지도사	농촌지도	23				23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농업·농림	1	1						
일반직	8급	농업·농지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송통신	2	2						
일반직	8급	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8급	보건·간호	5			5				
일반직	8급	행정·보건·환경	3	2				1		
일반직	8급	운전	5	5						
일반직	8급	전하상담운영	1	1						
일반직	8급	공업	6	2				2		2
일반직	8급	기계운영	1					1		
일반직	9급	합계	96	58	3	4	1	2	28	
일반직	9급	행정	29	20	1					8
일반직	9급	세무	4	2						2
일반직	9급	사회복지	18	11				1		6
일반직	9급	숙기	2			2				
일반직	9급	농업	1							1
일반직	9급	해양수산	1	1						
일반직	9급	환경	1	1						
일반직	9급	시설	5	2						3
일반직	9급	방재안전	2	2						
일반직	9급	의료기술	1			1				
일반직	9급	행정·전산	1	1						
일반직	9급	행정·시설	4	4						
일반직	9급	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9급	행정·세무·전산	2	1						1
일반직	9급	행정·사회복지	5	5						
일반직	9급	행정·해양수산	1	1						
일반직	9급	행정·전산·시설	1	1						
일반직	9급	행정·농업·농지	5	2						3
일반직	9급	행정·전산·보건	1			1				
일반직	9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9급	운전	5	1		2	1			1
일반직	9급	전기운영	1	1						
일반직	9급	사무운영	4					1		3
일반직	9급	공업	1	1						
일반직	9급	농기계교관	1				1			
행정직 계	별정6급상당	일반비서	1	1						
연구직 계	연구사	기록연구	1	1						
지도직 계	지도사	농촌지도	23				23			